제22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3. 1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66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2. 28(금)

라. 회부일자 : 2020. 3. 2(월)

2. 제안이유

2020~2024 금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다함께 돌봄(초등 돌봄), 아동학대 현장조사, 미세먼지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1,140명에서 1,145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114명 → 1,119명 (증 5)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 계 : 1,140명 → 1,145명 (증 5)
- 일 반 직 계 : 1,136명 → 1,141명 (증 5)
- 6급 이하 계 : 1,073명 → 1,078명 (증 5)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30조

나. **입법예고** : 2020. 2. 7. ~ 2. 27. (별도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별첨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인 다함께 돌봄, 아동학대 현장조사, 미세먼지, 주민참여예산 등의 추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 2. 28.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2조 본문 정원의 총수를 1,140명에서 1,145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114명 → 1,119명 (증 5), 조례 제2조제1호

○ **조례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정원 조정(안 별표3)**

- 총 계 : 1,140명 → 1,145명 (증 5)
- 일 반 직 : 1,136명 → 1,141명 (증 5)
- 6급 이하 : 1,073명 → 1,078명 (증 5)

다. 정원 조정의 타당성

1). 정원 5명 증원 이유

① 주민참여예산 전담인력 1명 증원

-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평가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주민참여수단 운영, 주민사업제안 실시 및 제안사업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참여, 일반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재정 민주주의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여 주민참여예산 기구 운영 및 참여예산사업 관리업무 수행

② 다함께 초등 돌봄 1명 및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 2명 증원

- 미래 시민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력 보강

- 아동학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재 민간위탁 중인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정을 공무원이 담당하며 우리 구는 아동학대사건이 3년 평균 105건으로 50건당 1명 충원 조건이나 2명만 증원하고자함.

-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대부분(64개 중 61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어, 아동분리·친권제한 등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한 업무임에도 **민간인**이 담당하여 **현장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 등이 빈번하게 발생(금천구는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

※ 서울 노원구의 경우,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사례관리는 공무직이 담당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정권한 보유(일본은 '22년까지 아동복지사 2천명 추가확충 예정)

③ 미세먼지 관련 전담인력 1명 충원

-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화[1] 및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 기대를 반영하여, 자치단체 내 미세먼지 관련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전담 인력 배치 필요

-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정책 추진 및 홍보를 통해 주민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 요구 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을 5명 증원하려는 이유는 우리 구 재정민주주의 내실화와 미세먼저 관련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미래 시민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정원 증원에 따른 기준인건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원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구의 기준인건비 관계는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예산, 인건비 집행현황은 보고서 5쪽 표2를, 정원 5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보고서 14쪽 참고

1) 주요지역 초미세먼지(PM2.5) 최고농도 경신, 비상저감조치 7일 연속발령 등

표2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집행현황

○ 2014년 ~ 2019년까지 연도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편성액과 집행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①)	예산편성액 (②)	인건비 집행액 (③)	비 고 (①-②)
2014년	85,476	83,947	75,817	1,529
2015년	89,904	85,889	80,113	4,015
2016년	91,488	87,670	83,808	3,818
2017년	97,198	91,886	88,486	5,312
2018년	99,124	96,337	91,673	2,787
2019년	104,405	102,969	95,487	1,436
2020년	108,789	106,816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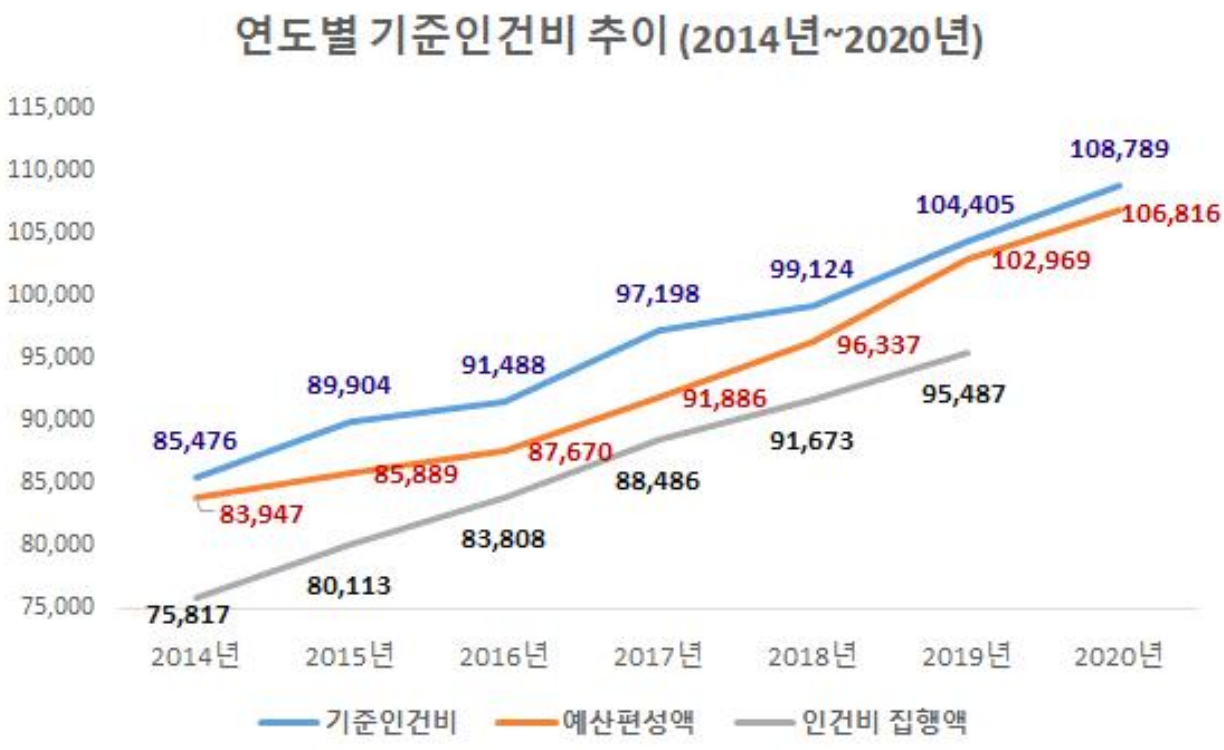

표3 정원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

○ **비용추계 산정기준** : 증원인원 및 기준호봉

직급	증원	호봉	'20년 기준액
9급	5명	1호봉	3,646천원

○ **비용추계 결과**(보고서 12쪽 행정지원과 비용추계서 내용 정리)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 계
인건비	109	223	227	232	236	1,027

정원조례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정원 5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6쪽 표3과 같이 1차 년도에 1억 9,000만원, 2차 년도에 2억 2,300만원, 3차 년도에 2억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우리구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는 보고서 5쪽 표2와 같이 1,087억 8,900만원이고 올해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1,068억 1,600만원임.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예산편성액은 약 19억 7,300만원의 여유가 있고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정원을 5명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3). 그동안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1995. 3월 금천구 개청이후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공무원 정원 증감 현황

구 분	총정원	비 고	구 분	총정원	비 고
1995. 3월	1,143명	금천구 개청	1995. 4월	1,163명	
1995. 6월	1,164명		1996.10월	1,172명	
1998. 9월	1,012명	IMF 정원감축	1999. 1월	990명	
1999.10월	931명	IMF 정원감축	1999.12월	938명	
2000. 5월	941명	IMF 정원감축	2001. 2월	942명	
2001. 7월	946명		2002. 4월	951명	
2002.10월	952명		2003. 3월	953명	
2007.12월	1,068명		2008.10월	1,064명	
2015. 5월	1,134명	찾동 실시로 사회복지직 등 증원	2018.12월	1,134명	
2019. 5월	1,140명	개인지방소득세, 지하안전관리 등 증원	2020. 3월	1,145명	아동학대, 미세먼지, 주민참여예산 등 증원

○ **주요 정원 증감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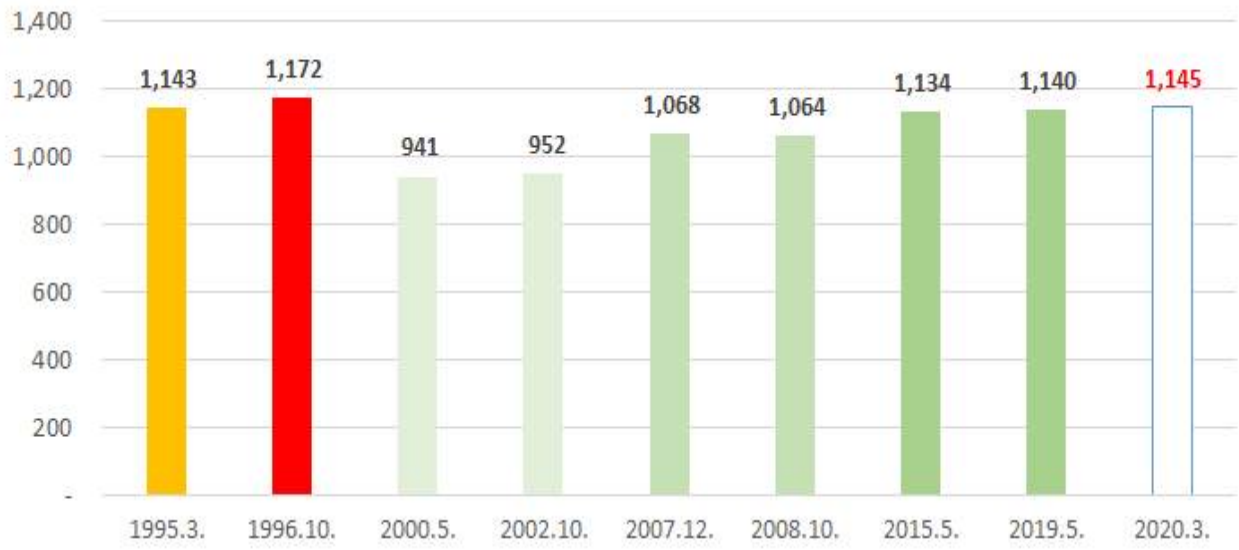

1995. 3월 금천구 개청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증원 증감 현황은 위 표4와 같음. 개청 당시 1,143명, 1995년 6월에는 1,164명에서 IMF 시 941명까지 축소되었고, 2015년 5월 찾동 실시로 사회복지직 70명 증원으로 1,134명이 되었고 2019년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지하안전관리 업무 등이 강화되면서 6명이 증원되어 1,140명임.

라. 검토결과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원을 5명 증원하려는 이유가 있고, 정원을 증원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이 운용되며, 우리 구 재정민주주의 내실화와 미세먼저 관련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미래 시민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붙임1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45	1,145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1,141	1,141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1,078	1,078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4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114명
2. (생 략)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td><td>제2조(정원의 총수) ----------

-------1,145명----------
-- ----------.

1. ---------- 1,119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td></tr>
</table>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40	1,140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1,136	1,136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1,073	1,073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145	1,145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1,141	1,141			
3급	1	1			
4급	8	6	1	1	
5급	52	32	2	8	10
6급 이하 계	1,078	1,078			
전문경력관 계	2	2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2	2			

붙임3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급별 비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름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책정기준	1%이내	6%이내	21%이내	31%이내	30%이내	10%이상	1%이내
개정후 비율	0.8%	4.5%	18.7%	29.8%	28.6%	17.0%	0.2%

- 인건비 기준액

구분	호봉 기준	20년 기준액	증원
9급	1호봉	3,646천원/월	5명

※ ① 기본급+②고정수당(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직급보조비)+③추가수당(가족수당,시간외수당,학비보조,출장비,연차수당,특수직무수당)+④복지포인트

- 임금인상율 : 연2%적용(최근5년 평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인건비	-	-	-	-	-	
	소계(a)	-	-	-	-	-	
세출	○인건비	109,398	223,173	22,7636	232,189	236,833	1,029,229
	소계(b)	109,398	223,173	22,7636	232,189	236,833	1,029,229
□총 비용(a-b)		-109,398	-223,173	-22,7636	-232,189	-236,833	-1,029,22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	-	-	-	-	
구비	자체재원	109,398	223,173	22,7636	232,189	236,833	1,029,229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09,398	223,173	22,7636	232,189	236,833	1,029,229

5.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효진 (2627-1012)